

○제목 : 제35차 이사회 회의록
○일시 : 2014. 12. 20(토) 16:00
○장소 : 이태리 제면소

회 의 록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제35차 이사회 회의록

- 일 시 : 2014. 12. 20(토) 16:00
- 장 소 : 이태리 제면소
- 회의소집통지일 : 2014. 12. 11(목)
- 참석인원 : 이사 4명, 배석인원 4명
 - 이 사 : 김상근, 김덕진, 김성수, 박태영
 - 배석인원 : 안대영, 박임순, 김영경, 이칠선

1. 성원보고

-김영경사회복지사가 재직이사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상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.

2. 개회선언

-김상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6시 수경복지재단 제3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3. 대표이사 인사

-김상근 대표이사가 연말이라 이사회 일정을 잡기가 힘들어 부득이 주말에 일정을 잡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, 한 해 동안 법인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. 오늘 이사회도 법인 중축공사로 인해 안건들이 많음을 말씀드리고 고견과 원만한 처리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다.

4. 전차회의록 처리

-김상근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, 김영경사회복지사에게 낭독, 보고하게 하다.
-김영경사회복지사가 전차회의록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낭독하다.
-김덕진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박태영이사가 재청하다.
-김상근대표이사가 의안에 대한 이의 없음을 확인 후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전차회의록을 가결 처리하다.

5. 부의안 심의 및 의결

- 제1호 의안: 2014년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변경사업 및 추가경정예산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의 변경사업 및 추가 경정예산(안) 의결 건을 상정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가 수경복지재단의 2014년 변경사업 및 추가경정예산(안)에 관하여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김덕진이사가 보조금이 185,000천원 정도 감소된 이유에 관해서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현재 공사 중인 비슬주야간보호센터의 공사가 입찰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관계로 보조금이 1차기성금 지급금액 외에 2015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린다.
- 김성수이사가 법인 사업 및 추경에 대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비슬원(의료) 사업 및 추경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박임순원장이 비슬원(의료) 및 비슬원(재가)의 변경사업과 추가경정예산(안)에 관하여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박태영이사가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조금이 당초예산 보다 3.500천원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다.
- 박임순원장이 대구시에서 재가시설별 동절기 물품지원비로 증액지원 된 금액임을 설명드린다.
- 이어서 안대영소장과 이칠선과장이 수경기억학교와 비슬노인복지센터 변경사업과 추가경정예산(안)에 관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다.
- 김덕진이사가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의 변경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이 원만하게 계획 되었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박태영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의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 후 참석 이사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□제2호 의안: 2015년도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2015년도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의결 건을 상정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, 이칠선과장, 박임순원장 및 안대영소장이 자료에 의거 수경복지재단 및 비슬노인복지센터, 비슬원(의료), 비슬원(재가), 수경기억학교의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에 관해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린다.
- 김덕진이사가 법인의 산하시설 전출금이 많이 증가 되었는데 법인 세입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를 묻다.
- 박임순원장이 장기요양수익전입금과 임대료 수입, 법인 후원금 등으로 충당됨을 설명하다.

- 김성수 이사가 비슬원재가노인지원센터의 2015년 보조금지원이 증액 되는지 묻다.
- 박임순원장이 2015년 1월에야 예산 및 운영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2014년 예산에 준해서 사업 및 예산을 계획했음을 설명 드리고 예산이 증액되어 재가 노인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다.
- 박태영이사가 수경복지재단 및 비슬노인복지센터, 비슬원(의료), 비슬원(재가), 수경 기억학교의 사업별 계획과 예산이 적정히 잘 계획되었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덕진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□ 제3호 의안: 비슬주야간보호센터 증축공사 사업규모변경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3호 의안인 비슬주야간보호센터 증축공사 사업규모변경(안) 의결 건을 상정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가 자료에 의거 설계변경을 통한 다용도실 부분과 테라스부분을 생활실 면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다.
- 김성수이사가 증축면적이 얼마인가를 묻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가 증축면적은 $254.78m^2$ 에서 $272.45m^2$ 로 $17.67m^2$ 가 증축된다고 설명 드린다.
- 박태영이사가 증축에 따른 법적인 부분과 소방설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증축에는 건축설계사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며 소방 또한 설계변경 및 시공을 통해서 증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다.
- 김덕진이사가 설비구조 변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물리치료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실의 변경과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, 또한 식당 및 조리실은 요양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설비구조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다.
- 김성수이사가 그런 필요성과 전문가들의 진단결과 문제가 없다면 공사기간 중에 증축 하는 것이 비용부분이나 공사 진행도 원만하고 바람직하겠다고 말하다.
- 김덕진이사가 김성수이사의 의견에 동감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박태영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,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□ 제4호 의안: 비슬주야간보호센터 사업비 변경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4호 의안인 비슬주야간보호센터 사업비 변경(안)을 상정하고 김영경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하게 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가 자료에 의거 기능보강사업(비슬주야간보호센터) 사업비가 사업량 증가(추가증축, 설계, 감리비 등)에 따라 기존 사업비 262,000,000원에서 286,216,200원 24,216,200원 증액 됨을 설명하다.
- 김성수이사가 대표이사가 이미 22,000,000원이나 충당하였는데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추가비용 24,216,200원은 기존법인 예산과 비슬원 잉여금을 법인회 계로 전출하여 충당가능하다고 설명하다.
- 박태영이사가 사업비 충당이 준비되어 있고 시설확장으로 기존시설 입소자들의 서비스질 향상도 주어지는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반기로 동의한다고 말하다.
- 김덕진이사가 재청하다
- 김상근대표이사가 이의 없는지를 묻고,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다.

□ 제5호 의안: 비슬주야간보호센터 낙찰차액활용사업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5호 의안인 비슬주야간보호센터 낙찰차액활용사업(안) 건을 상정하고 김영경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하게 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가 자료에 의거 낙찰차액 2,300,000원으로 1층 안전벽과 안전펜스 및 방범창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하다.
- 김성수이사가 공사비는 262,000,000원인데 낙찰차액이 어떻게 2,300,000원 정도 밖에 안되는지를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공사비는 262,000,000원으로 건축, 소방, 전기 통신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해 분리 발주하였으며, 공사비 262,000,000원 중에 건축공사비는 237,200,000원으로 G2B입찰 결과 예정가는 241,338,025원이며 낙찰률 97.332%인 234,900,000원으로 낙찰되어 낙찰차액이 2,300,000원이라고 설명하다.
- 박태영이사가 공사금액 2,300,000원으로 안전벽, 안전펜스, 방범창 등의 공사가 가능할 것인가를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공사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 2,300,000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다.
- 김덕진 이사가 공사마무리에 부족한 부분을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것 같으니 낙찰차액 을 잘 적용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반기로 동의하다.
- 김성수이사가 이에 재청하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이의 없음을 묻고,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반기로

가결 처리하다.

□ 제6호 의안: 비슬주야간보호센터 공사중단 및 공사기간연장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6호 의안인 비슬주야간보호센터 공사중단 및 공사기간연장(안)을 상정하고 김영경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가 금년 겨울이 따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12월 이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어 부득이 20여일 공사를 중단하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다.
- 김덕진이사가 공사 중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느냐고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감리건축사의 중단 요청에 따른 이사회 의결 결과 단체장의 승인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 설명하다.
- 김성수이사가 1월중순 이후가 더 추운데 공사중단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다.
- 김상근 대표이사가 외부골조 공사는 거의 끝날 것 같고 1월 중순 이후에는 실내 공사만 남게 되므로 날씨와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 드린다.
- 김덕진이사가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공사가 중단되는 만큼 추후 단체장의 공기연장 승인 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다.
- 박태영이사가 공기연장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, 공사중단과 공사기간연장에 이의가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성수이사가 이에 재청하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이의 없음을 재차 묻고,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□ 제7호 의안: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

- 김상근대표이사가 제7호 의안인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을 상정 하다.
- 김영경사회복지사, 이칠선과장, 안대영소장, 박임순원장에게 수경복지재단 및 비슬노인 복지센터, 비슬원(의료), 비슬원(재가), 수경기억학교의 운영규정 개정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박태영이사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묻다.
- 박임순원장이 시설별 운영여건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2014년 하반기 지도점검결과 규정에 근거한 운영의 필요성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.
- 김성수이사가 운영규정은 관련법, 지침 등에 따라 잘 개정 되었는지를 묻다.

- 박임순원장이 회계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, 행정부분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, 근간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, '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' 및 '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관 운영메뉴얼' 지침 등에 준해 개정하였음을 설명 드리다.
- 김덕진이사가 개정된 운영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관해 직원들에게 설명과 편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다.
- 박임순원장이 수경복지재단 및 산하시설들의 운영규정 개정(안)이 승인되고 나면 각 시설별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편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드린다.
- 박태영이사가 법인 및 산하시설의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 듣고 살펴 본 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성수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재차 이의 없음을 묻고, 참석이사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6. 폐회

- 김상근대표이사가 기타의견 여부를 묻다.
- 김성수이사가 의견이 없음을 말하고 폐회하기를 동의하고, 김덕진이사가 재청하다.
- 김상근대표이사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19:0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이상과 같이 제35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14. 12. 20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대표이사 김상근



이사 김덕진



이사 김성수



이사 박태영

